



어린이가 안전한 오늘, 안심할 내일

1.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?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에 따르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(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.

* 법 제16조~17조, 동법 시행령 제9조

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란?

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.

2. 어린이안전교육! 이론에서 실습까지, 몸으로 익히는 교육입니다.



이론 2시간 (온라인 수강)

- 응급상황 행동요령
-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


실습 2시간 (지역별 집합교육 참석)

-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
응급처치 실습교육

3. 어린이 안전교육,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라면 신청하세요!
연중 상시 접수 * 2026년 하반기 교육일정 확인 가능



👉 신청 페이지

② 가정에서도 심폐소생술·기도폐쇄처치술을
함께 익혀보세요!



👉 영상 페이지

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·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.
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기관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,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.

교육 안내 및 신청 **1661-5666**



행정안전부



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



어린이가 안전한 오늘, 안심할 내일

1.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?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에 따르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(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.

* 법 제16조~17조, 동법 시행령 제9조

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란?

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.

2. 어린이안전교육! 이론에서 실습까지, 몸으로 익히는 교육입니다.



이론 2시간
(온라인 수강)

- 응급상황 행동요령
-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


실습 2시간
(지역별 집합교육 참석)

-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
응급처치 실습교육

3. 어린이 안전교육,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라면 신청하세요!
연중 상시 접수 * 2026년 하반기 교육일정 확인 가능



👉 신청 페이지

② 가정에서도 심폐소생술·기도폐쇄처치술을
함께 익혀보세요!



👉 영상 페이지

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·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.
2022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기관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,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.

교육 안내 및 신청 **1661-5666**



행정안전부



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